2022. 9

입 법 정 보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Ⅰ. 법령 제정·개정 동향 ····· 1

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4
3.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8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9
5. 식품안전기본법 (개정)·····10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11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13

1.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14
2.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15
3.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16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 17

Ⅰ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 `22. 9. 1. 시행 `22. 9. 1.]

소관부서 :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95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근무기간별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의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정 시 자격증, 근무경력 및 근무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 등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제도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제32조)

1)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정기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하고,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함.

나. 자격증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도 정비(안 제23조제1항 · 제3항 및 제5항)

1)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함.

2) 가산점을 줄 수 없는 자격증 등의 범위에 가산점 부여가 제한되는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3)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소지하여 승진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자격증 등의 소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함.

다.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제도 개선(안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25조의3 신설)

1) 특수지 근무, 특정 직위 근무 및 특정 업무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해당 가산점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함.

2)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평정을 할 때 종전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직위 근무기간별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여 전문직위 근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함.

3) 지방공무원으로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특수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으로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4)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신설 · 변경 · 폐지하는 경우에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던 것을, 특수지 근무경력 등 가산점 부여 기준 · 요건 등을 신설 · 변경 ·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변경 등을 한 내용은 변경 등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함.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1 9 24. 시행 `22. 9 25

소관부서 :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정이유

○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부진·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연구개발·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금융,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표준화·인증, 집적지·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3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2. 6. 15. 시행 `22. 9. 1.]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 044-201-40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량의 가연성 화물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사고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2. 9. 6. 시행 `22. 9. 6.]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22. 6. 10. 시행 `22. 9. 11.]

소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 ·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2. 9. 20. 시행 `22. 9. 20.]

소관부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 세제 · 판로지원, 국유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9. 20. 시행 `22. 9. 20.]

소관부서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전역 후의 삶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전역 당시 계급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병과 자료는 각 군별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인적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9. 20. 시행 `22. 9. 10.]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한 무기 · 탄약에 대해서는 국제입찰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격입찰 · 기술입찰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격 · 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입찰서의 원칙적 제출방식을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 · 일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재정지출 부담 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시 · 도지사의 심사기준 제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통보 절차로 변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일 `22. 8. 3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오존 예보의 내용 및 기준 개정 (안 별표 1의 가)

- 오존 예보 등급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변경

나. 오존 경보의 내용 및 기준 개정 (안 별표 1의 나)

-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 함

다. 오존 예보에 따른 행동요령 개정 (안 별표 2의 가)

- 오존 예보 등급별로 민감군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행동요령을 변경

2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

[의결일 `22. 8. 29.]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지역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균형발전지표 활용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

마.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3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의결일 `22. 9. 5.]

제정이유

○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경제불황, 치열한 경쟁, 사회계층간 대립 등으로 외로움이 보편화 되고,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사회적 관계 단절속의 외로움을 겪는 기간과 그 정도가 심화됨.

○ 지속적인 외로움으로 도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거나 고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하는 등 외로움에 관한 종합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가. 외로움 극복 및 예방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나.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다. 외로움의 원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외로움 척도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마. 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 등 관련]

[의견22-0235] 충청남도 아산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주민센터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로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사람 등의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자치회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사유로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거나 학교장·기관장·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주민센터조례와는 달리 별도로 재위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민자치회조례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주민센터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이하 “재위촉 제한규정”이라 한다)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쓰는 표현으로, 준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에 관하여는 ○○조례 제○조를 준용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자치회조례는 주민센터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조례의 재위촉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추적용’이란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여 법적 규율의 흠결을 보충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경우에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민자치회조례가 이미 위원의 자격(제7조)·선정(제8조)·임기(제17조)·해촉(제19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주민센터조례의 재위촉 제한규정은 일정기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

하는 불이익한 내용이므로 주민센터조례의 재위촉 제한규정을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2. (생 략)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 5. (생 략)

③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그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2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의견22-0212] 전라북도 김제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김제시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일자리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발굴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제시 일자리위원회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제시조례 제8조에서는 해당 위원회는 조례 제정일로부터 4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례 전체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한 한시조례로 입법이 되었는바 그 존속기한이 지나면 해당 조례는 실제로는 조례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제시조례에서 규정한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위원회의 운영도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 등 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2023. 4. 4.]된 후인 2023. 12. 31.까지 연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제1항 관련]

[의견22-0210] 전라북도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2023. 4. 4.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제1항에서는 202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3. 12. 31.까지 연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세율경감, 세액가면 및 세액공제와 같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023년 4월 4일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전라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이라는 특정지역의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이라는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면조례 제9조의2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

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군산이라는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자동차산업·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책사업 등에 신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입법취지와 ‘특정지역’, ‘특정산업·특정시설’이라는 문구 앞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산업·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과세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라북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회복 효과,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